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6. 5. 29.(금) 10:00

장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욱 위 원 (6명)

불참위원 : 없 음

---

## 제1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1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예산안인 만큼, 재원이 국민 권익과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건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공개모집과 철저한 심사를 거쳐 추천단체를 확정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이 공익성을 지키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속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 유익을 위해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12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과 함께 제13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26-14-435)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재식 재정팀장

- 재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방미통위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세입은 7,530억 원, 세출은 2,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7,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2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원 감소했습니다. 직전 5년간 과징금 수입 평균으로 계산하는 세입예산액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기금세입은 7,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이 69억 원 감소한 1,457억 원, 주과수할당대가 수입이 전년 대비 480억 감소한 2,879억 원으로 예상된 데 따른 수치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00억 원 등 기타수입은 3,10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2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2,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6억 원으로 96억 원 증가, 기금은 1,914억 원으로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7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모든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향유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규제 사업 위주의 재정 운용 기조를 전환하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산업 생태계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입니다. 미디어 가치사슬 전반의 미디어 주권자로서 국민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재편·강화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미디어 역량교육 주관 부처로서, 다양한 미디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사업 확대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신고 포상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확대 등 미디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방미통위의 행정사무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 AI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제작비와 전·현업 방송인력 대상 AI 제작 교육도 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입니다. 미래 방송 미디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에서의 AX 전환과 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증액 사업을 다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생태계 구축 및 진흥입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신설, 이용자의 시청 데이터에 기반하여 K-FAST 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등 사업화 지원,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지역·중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다양한 불법 유해정보 신속 차단, 허위 조작정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인터넷상 불법광고 모니터링 확대 등 이용자 보호 강화 사업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디어 통합 법제 시행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OTT 서비스 활성화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융합 정책연구 수요에 맞춰 정책연구 예산도 확대·편성하였습

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증액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 성과 평가 '감액' 평가를 받은 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며, 확보된 재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주요 신규 증액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에 오늘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약간 보충적인 설명들도 기록을 위해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9쪽 미디어 통합 법제 환경 마련의 다양한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수행 부문의 일부 증액이 있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舊 방통위 체제의 규제 중심에서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면서 유료방송 등 진흥사업들을 우리가 새로 이관 받게 되는 부분들에 관한 연구 부분들을 추가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실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일부 증액되는 소요도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최수영 위원

- 사실 간담회에서도 봤고 오늘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어찌 보면 방미통위 1기의 사실상 본예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의미를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성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특히,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방송·통신 분야의 AX 전환 가속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경쟁력 강화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과기부로부터 진흥국을 이관 받아서 지난해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관을 받고 나서 이 예산을 봤을 때 '진흥 기능이 더 강화됐구나. 역시 방미통위로 이관하니까 의미가 더 살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예산 항목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일관 받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지수로 놓고 보면 물론 신규 사업에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실무진의 의견도 있지만, 국민들이 일관 체감하거나 또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납득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저는 앞으로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더 이상 냉정하게 말하면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갔고, 앞으로 글로벌 OTT와 경쟁하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는데 진흥의 방식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고 조금 더 사업자들도 확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예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X 전환이나 글로벌 유통망 시장에 우리가 나가서 비로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진흥의 일들이 제대로 사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진되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사무처가 이런 것에 대해 더 나설 때 우리 위원들도 여야 없이 국회가 기획예산처를 상대할 때도 '이러이러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제한된 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진흥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저는 진흥

국의 방미통위 이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들 시장에 대해 반응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유념하고 또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사무처 혹시 보충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성재식 재정팀장

-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한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진흥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 예산 같은 경우 올해는 361억 원인데 내년에는 46억 원으로 85억 원 23.5% 정도 증가시켰는데 물론 이 금액만으로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처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처안은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들이나 국민께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사실상 어찌 보면 진흥 예산이 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앞으로 방송사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FAST와 OTT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 방송사의 AI 데이터 기반 제작에 대한 전환 문제 이런 점들도 구체성을 떨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성재식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제가 매번 처음 발언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최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에 대해서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상파나 신문의 광고료가 예전에 비해 10분의 1, 제가 알기로 예전에 전면광고 신문사의 경우 1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거래가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을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콘텐츠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이 돌아가려면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TT라든지 유튜브,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 모델에서 광고 모델로 넘어갔는데 OTT의 경우 지금은 구독 모델이지만 조금 있으면 광고 모델로 전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광고에 있어서 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 추천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OTT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쏠림현상이, 양극화가 굉장히 OTT도 심화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재식 재정팀장**

- 일단 말씀하신 OTT 부분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산에는 OTT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기존에 있던 시청자들의 이용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광고도 만드는 사업화를 다각화할 수 있는 예산도 적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디어통합법제 관련해서 “규제 중심에서 진흥 방향으로 방미통위 제1기 정책의 기본방향이 큰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향후 미디어통합법제를 충실하고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을 제대로 해야겠고, 그 과정에서 산업적 진흥뿐만 아니라 실제 미디어 변화 환경을 향유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진흥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결과,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미디어 기본사회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인 보완과 많은 고민들이 함께 산업 변화와 진흥과 함께 고려되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성과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감안 하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런 국민들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측면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 법제 하에서 많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는 정책은 정치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차별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적 목표를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미디어 쪽에서의 정책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산업 진흥이 있고, 또 다양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은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이라는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뚜렷이 하고 예산을 그만큼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의 진흥

부분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연구 예산 관련입니다. 저도 우리가 정책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기존에 위원회가 해 왔던 형식적인 정책연구,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아니라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충분히 시장을 분석해서 나온 정책안이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 확보라고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심의·의결하는 것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예산이 14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 성재식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140억 하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데 콘텐츠 방송 산업 육성 예산이 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콘텐츠 방송 산업 육성 예산보다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 140억이 콘텐츠 방송 산업 육성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더 방미통위의 산업 진흥 효과나 방송·미디어·통신 발전에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1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이용자들에게 불법스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책정된 예산도 13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보다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이 많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이라는 것이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그래도 이러한 전체 예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우리 고유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이만큼 삭감된다는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해서 앞으로는 국악방송이나 아리랑TV에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예산안이 아니라 크게 긴 호흡으로 한 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연구를 하면 일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평가라는 것은 연구결과가 우리 정책이나 또 우리 업무 추진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연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바꾸든지, 연구자를 바꾸든지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점검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간이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책의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는 미디어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국민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대 방미통위의 뜻을 담았습니다. 사무처는 실질적인 방미통위의 첫 예산안인 만큼, 향후 예산처 심사, 국회 심의 단계까지 위원회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 (2026-14-436)**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이사 추천단체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한 단체 중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5월 15일 선정 계획 의결 이후 경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 번째, 동그라미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5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아래 <표>는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보고와 의결사항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심사위원회의 추천단체 심사 및 선정 결과입니다. <가> 한국방송공사입니다. 2개 분야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분야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변호사 단체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나>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역시 같은 2개 분야이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하고, 변호사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입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교육 관련 단체 2개 분야이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 분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5> 추진일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오늘 5월 29일 선정된 추천단체에 선정 결과 통지 및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지]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간담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됐습니까? 제가 간담회에서 <4> 추천단체 심사·선정 결과 <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담회에 올렸습니까?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심사를 어제와 그제께 했기 때문에...

○ 이상근 위원

- 오늘 처음 보는 것이라서 보는 순간에 약간 한 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량점수와 정성점수가 있어서 역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국방송공사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다 보면 정량점수가 있고 정성점수가 있는데 정량이 높는데 떨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정량평가 비중이 40% 정도 되고 정성평가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과정에서 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근 위원

-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한국방송공사에서 그렇게 되고 다른 변호사 단체도 마찬가지로, 방문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한 단체가 중복해서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기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정량에서는 분명히 앞섰는데 정성에서 역전이 되면 이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사 결과 정량과 정성 비중이 정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정성에서 좀 더 점수를...

○ 이상근 위원

-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도 정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량이 있는데 정성으로 뒤집어엮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제가 동의할 수 있지, 지금처럼 툭 날아오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도 쪽 자료를 봤는데 이번 선정은 단순히 우리가 민간 공모 절차가 아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의 시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더 세밀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무처에 보니까 총평에서도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의 구체화, 자료제출의 표준화, 정량·정성평가 방식의 보완, 단계 유형별 특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정도로 허술하기보다는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약간 듭니다. 저는 변호사 단체를 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 KBS나 방문진 전체 보면 정량에서는 246.5점으로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회원수나 대표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강점이 있다는 측면인데 정성에서 보면 갑자기 폭 줄어서 581.56점으로 내려오고 578.11점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물론 이것이 정성과 정량을 함께 배정했다는 일종의 외형적인 정당성·공정성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어찌 보면 이것은 소수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심사위원 추천 건은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정치적 중립성, 절차적 객관성 그다음에 국민적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론 사무처도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시행인 만큼 저도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배점 구조의 적절성 문제, 그다음에 정성평가 항목과 세부 판단기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성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의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공표가 되고 나갔을 때 과연 방송법 개정에 따라 드러난 사추위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런 절차를 거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 담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두 분께서 이번 추천단체 선정 결과에 대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매번 심사할 때마다 또 재허가든 재승인이든 변경허가든 그때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저는 늘 정량적 평가요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추천단체 선정계획을 만들 때도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정량적 요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따라 정성적 요소에 들어가 있지만 정량적 평가가 객관화돼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그때 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처음에는 정량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의 경우에도 2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평가항목 <1>번 활동기간과 회원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량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머지 항목에서도 정량을 확대해서 40.1%로, 4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5월 15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정성적 요소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정량적 평가요소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정성적 평가요소라고 분류했지만 그 정성적 요소라는 항목 안에서 정량적 평가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넣어서 이루어진 심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이러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을 우리가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주신 의견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정량적 요소를 확대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이것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관해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정량·정성에 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세 분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기존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역할,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가 새로운 제도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정량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에 나타나는 결과는 단체의 규모나 활동횟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단체나 큰 규모의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이사 추천업체 권한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제도가 예상하는 소수자나 또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또는 공익적 활동에 집중해 왔던 단체들의 의견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어쨌든 이번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우리가 다음 심사계획을 짤 때는 더 추가적인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엇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양적평가로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어느 사안이든 양적평가만 할 수 없고 양적평가와 함께 질적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들 하셨고 노력들을 하셔서 최대한 양적 평가 항목들을 늘리고 증가시키고 합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 항목이나 배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양적 평가의 결과가 질적평가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다 보고는 못 받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분야를 보면 양적평가가 1점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점 차이의 양적 평가가 질적평가에서 반복됐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어제 야당 청문회에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3개 학회에서 2인을 추천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개 학회 중 한 학회가 반대하면 2인 추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저는 어제는 듣기만 했으니까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의 의견, 그때 SO 하는 데도 저희와 관련된 곳이어서 제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야당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회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등 하는 학회가 만약 몽니를 부리게 됐을 때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점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어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금방 이상근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은 사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저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각 법에 의해 추천된 3개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정신이어서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 단계에서 그리고 선정 단계에서, 추천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존중의 원칙을 가지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규범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은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가 실증적인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나 정량성이 가지는 질적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성평가가 병행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정량평가는 활동이나 실적 면에 있어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인 최소요건을 갖추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 활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질적인 평가, 예를 들어 활동에 있어서 학술대회를 똑같이 3회를 했는데 그 3회의 내용이 등급별로 A, B, C, D로 나눌 수 있는데 C급 학회를 세 번 한 학회와 A급 학회를 두 번 한 학회가 학회 개체수에서 한 회가 적다고 해서 점수를 더 높이 받고 그것은 불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모든 평가가 정성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성평가에는 불가피하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중립성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풀(pool)과 위원님들의 추천과정들을 거쳐서 선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저희들이 선정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반원칙들이 존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량평가가 최소기준이라는 요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심사과정에 대해 한 번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추천단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결과들을 보면 수백 점 기준의 1점 차라거나 10점 미만의 차이가 40%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량평가에서 있었고, 정성평가에서 그 부분들이 또 현저한 차이로 극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불공정성의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저는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정리하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가지는 구조적인 차이, 두 번째 저희 법령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저희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지하다시피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과정, 특히 저희가 이미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이 도과해서 그 법의 취지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해서 많은 방송 질서에 있어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저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은 오늘 적절하게 의결되는 것이 저희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상근 위원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KBS에 추천하는 단체가 있어서 KBS를 하면 방문진은 하지 않게 하자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지금 류신환 위원님께서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학회 1, 2, 3등 똑같습니다. 변호사 단체 1, 2등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시급성이 있지만 한 번 더 논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중복 선정을 허용할지 말지와 관련된 결론으로 숙의 끝에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고, 방송미디어 생태계에서 학회나

그다음에 법조계의 상황은 전면적인 다양성이 보장되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세평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예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제에 관련된 찬반 논의에서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이 법제화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기속되어서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중복 선정을 각 방송사별로 혹은 관련 단체별로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기속된다는 점, 이것을 다시 여기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최수영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고민이 묻어나듯이 저희 위원회가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해 준다, 못 한다 이야기는 자기 부정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너무 현실로 나타났다, 이 점은 대단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량에서 앞섰는데 정성에서 크게 뒤집힌다? 이것이 어찌 보면 물론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윤성옥 위원님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채점되었는지 한 번 보고 받아보겠다는 것은 사후 보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보완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객관성 그리고 국민적 수용성이 안 되는 공영방송의 사추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후 보완이 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짙긴 짙었지만 조금 덜 짙은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가 이것을 의결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후에 많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추가로 좀 더 논의해 보겠다는 측면을 전제로 이 안을 의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민수 위원

-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량·정성 두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의결할 때는 정성의 배점이 많은데 거기에 계량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량에 기초한 정성평가로 가기로 의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성이라는 것이 완전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구성요소에는 정량적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으신데 다양성 보호 내지는 소수자 보호,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성, 소수자 보호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소 대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과다 대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보호를 하는데 그 소수자가 다수자와

동일한 힘을 발휘하는 구조라면 이것은 대표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연계해서 다양성 논의 내지는 소수자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의견이 어느 정도 충분히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강하게 의견 개진을 해 주셨는데 최종 의견으로 의결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의견으로 이해해야 할지...

○ 이상근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서는 의결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의 원리에 따라 수용하시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저희들의 결정은 행정적인 결정인 것이고 사후에 다양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 지극히 책임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저도 동의하고 환기시켜 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한 분이 이견을 가지고 계시므로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수 의견을 확정된 후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안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6인이 출석해서 한 분이 반대하고 있고 5인은 의결에 찬성하셨습니다. 혹시 정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5 대 1의 의견으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도 있었습시다만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방송 3법의 개정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해 온 대장정의 결실이자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첫 걸음입니다. 공영방송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선정된 단체들이 이사 추천 과정에서 소임을 다해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는 이후 이어질 이사 선임 절차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참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이틀간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매일 늦은 밤까지 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무처 관계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2026년도(하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6-14-437)**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 “2026년도 하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2026년도(하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 대구 등 지역MBC DTV 등 총 28개 방송사업자,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재허가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심사 기본 방향입니다. 심사의 일관성 확보 및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정 심사사항 및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하되, 방미통위 출범, 방송법령 개정 등 방송미디어 정책 환경 변화를 심사 항목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UHD·라디오·DMB 등 재허가 대상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통합하고 각 매체 관련 사항만 별도로 심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재허가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와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미통위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결정하고 필요 시 신청법인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미통위에 심사의견을 제시 하게 됩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과 관련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방송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심사사항 중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을 개편하여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심사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50점의 배점을 부여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허가 심사항목의 법정 심사항목인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본 계획 대비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법정 의무사항 및 중복·유사 조건 등은 통합 정비해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하고,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 및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시의성을 상실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건 및 권고는 폐지·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이 바라는 방송 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하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허가 신청서 원본 1부만 문서로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 의견을 토대로 1,000점 중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의 ‘재허가’를 의결 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는 3년의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한편,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6월 말까지 재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12월에 재허가 의결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희가 이번에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심사항목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심사 배점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행실적 가지고 논의한 끝에 2개 안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안이 공적책임에 대한 부분은 80점, 그다음에 편성위원회 관련해서 60점이었는데 저희가 70점, 50점 이렇게 안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래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은 고려하고 이것이 계속 방송법에 따라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반영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들은 추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70점, 50점으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또 봐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관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 및 합리화를 마련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언적인 선언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허가 세부계획과 개정사항을 마련할 때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거처럼 관리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콘텐츠 경쟁력이라든가 투자여력, 경영 안정성,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대응 능력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역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방송의 공정성, 공적가치는 기본영역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과 융화될 때 비로소 방송사들이 재허가 조건이 왔을 때도 동의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숙의하면서 논의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고, 새롭게 편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점수 배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재허가·재승인할 때는 좀 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확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할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사정도 상당히 고려되는 측면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논의한 상황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까지 해 주셔서 공적 기록으로 저희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안은 사실은 경과에 나와 있듯이 약 4년 전인 2022년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정변경은 그동안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의 방송평가와 관련된 혹은 재허가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적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특수상황이 있는 세부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동시에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계획안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에 일정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급변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좀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전망적인 정책 비전 하에서 계획을 또 향후 2027년 이후 재허가에 적용해야 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와 또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는 세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성 그리고 비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는 세부계획이라는 점에서 사무처에서 이 점 유념해서 그 집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스스로도 이 점에 있어서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저희들에 대한 요구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각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재허가 기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 주요한 내용 한 가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간담회에서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하고 또 합리화 하자는 저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허가에 부과되는 부관들이 조금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건들을 너무 산재해서 부과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 중심으로 부관을 조정 하자는 의견들이 이번 계획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잘 준수해서 향후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조건들은 줄이고 그리고 실질적이고 꼭 지켜야 되는 조건들 위주로 조건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실효성도 높이고 사업자들의 준수율도 높이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도 높이는 그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6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법 개정 때문에 심사항목이 신설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행실적',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은 정성 영역에 둘 것입니까, 정량 영역으로 둘 것입니까?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도 이 세부계획을 만들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및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준수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량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것만으로는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약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과정에서 정성적으로 보충적으로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제가 최근에 재허가 관련된 심사의 내용, 진행 경과를 살펴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편성위원

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행실적을 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은 ‘운영이 됐구나’, 그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회의도 했네. 그러면 이것은 충족’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형해화되어서 존재할 뿐인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공적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할 때 이것을 형해화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허가신청서를 접수받고 나서 현장 점검을 갑니다. 현장 점검에서 저희가 점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예고하고 가면 회의하는 자리 만들어놓고 사진 찍어줍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가 법적 심사 기준인데 지금 중분류로 수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것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성평가로 놓으면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의견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법에서 이것을 심사기준으로 넣은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평가의 세부기준도 만들어져야 원님 재판같이 ‘이것 한 것’, ‘하지 않은 것’ 이런 앞서서도 나왔지만 너무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실질과 동떨어진 평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새로 들어간 항목이니 만큼 특별히 더 세부기준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조 자체가 기본계획이 의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 계획을 의결하는 시스템으로 재허가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최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허가·재승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26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심사일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국가 행정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에서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정책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전 위원

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단에 기속돼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매해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기본계획 없이 '재허가 계획'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 위원장님, 공정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하십시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 저희가 재허가 평가를 하면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검증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얼마나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이유가 검증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방송사가 공정성이 제고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약간의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이나 하면 '우리는 재허가를 통해 이 사업자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7년짜리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 방송이 공정한 해? 방미통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방송사업자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지?'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과 국민인 시청자들의 판단에 괴리가 심할 때 그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우리의 평가결과와 국민, 시청자들의 평가가 서로 엄청난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갖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고민수 위원님 평소 존경해서 말씀을 합리적으로 듣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적책임이라든가 공정성, 편성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비계량적 요소들이 확대가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예측 가능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성 담보라는 기준은 아주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것을 자꾸 비계량적 요소를 확대하면 이것이 오히려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편성위원회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 배점이 점점 커지면 재허가 판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질도 고려되어야 하고 현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계량적 요소로 가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민수 위원

- 말씀을 주셨으니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성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계량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해화되어 있는지 실효적으로 운영되어 있는지 실질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요소를 빼고 정성적 요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주로 위원님들께서 세부계획안의 취지에는 간담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수렴된 의견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은 향후 재허가 체제를 우리가 개편함에 있어서 참조해야 할 사항들을 사무처에 주문해 주신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사무처는 향후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될 재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기 타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8. 폐 회

○ 김중철 위원장

- 오늘 안건 논의를 위해 열띤 의견개진해 주시고 위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폐회】